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12. 23 선고 2020가단101872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부산지방법원 2022. 9. 14 선고 2022나41874 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12. 23 선고 2020가단101872 판결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덕현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1. 10. 14.

판 결 선 고 2021. 12. 23.

주 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19. 한 소유권경정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18,639,2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8,639,2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 4/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4지분에 관하여 2015. 3. 19. 한 소유권경정의 상속협의분할 계약은 22,501,18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501,18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예금자 등의 보호 및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부실금융기관의 영업 또는 계약을 양수하거나 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에 근거하여 설립된 정리금융기관으로서, 소외 C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지급명령을 받아 2019. 12. 11. 현재 그 원리금의 합계가 131,728,001원에 이른다(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하고, 개별 채권을 지칭할 때에는 아래 표의 순번으로 특정한다).

순번	사건번호	대출원금잔액	기판결 이자잔액	지연손해금	합계
1	부산지방법원 2016차전7664	4,886,883		20,626,127	25,513,010
2	부산지법서부지원 2018차전2679	3,000,000	2,202,410	8,569,150	13,771,560
3	부산지법서부지원 2017차17	960,299		7,266,120	8,226,419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153131	2,743,793		17,007,006	19,750,799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58981	4,644,195		20,844,801	25,488,996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224111	4,274,492	31,830,618	2,872,107	38,977,217
합계		20,509,662	34,033,028	77,185,311	131,728,001

2) 한편 이 사건 채권 중 위 순번 1 내지 5항의 경우 별지2. ‘지급명령 및 판결 내역’의 기재와 같이 각 지급명령 이전에 확정판결이 이루어졌다가, 그 시효연장을 위하여 지급명령신청이 이루어졌는데, 그 확정일자 등 내역은 위 별지의 기재와 같다.

나. 1) C의 어머니인 D은 2014. 4. 23.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E, 피고, C, F가 있다.

2) G조합은 2015. 2. 16.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을 지칭할 경우 해당 별지의 순번에 따라 특정한다)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위 상속인들 명의로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한편 그 청구금액을 59,235,505원으로 한 G조합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2015. 2. 26. 임의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가 마쳐졌다.

3) 피고는 2015. 3. 19. 망 D의 상속인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이를 취득하는 내용으로 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가 이루어짐에 따라 망 D의 상속인들 명의로 이루어진 위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정하여 자신의 단독 명의로 소유권경정등기를 마쳤다. 당시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다.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이를 공동담보로 하여 망 D이 채무자인 G조합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3,800,000원,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는데, 피고는 2015. 3. 2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채무자를 자신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2015. 4. 22. 변경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을 34,00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부기등기를 각 마쳤으며,

2015. 3. 20. 이 사건 각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지상권자가 G조합인 지상권설정등기(목적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의 소유, 존속기간 2015. 3. 20.부터 만 30년간)를 마쳤고, 그 과정에서 G조합과 사이에 2015. 3. 20. 18,300,000원, 2015. 4. 23. 10,000,000원에 관한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2) 한편 피고는 2016. 11. 11. G조합에 위 2015. 3. 20.자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 18,352,250원(원금 18,300,000원, 이자 52,250원)을 변제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이 사건 3, 4부동산에 관한 G조합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말소한 다음, 이 사건 3, 4부동산에 관하여 2016. 11. 8.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외 H 명의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2021. 4. 14. 현재 시가는 108,357,000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밀양시장,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G조합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에 대한 과세자료제출명령결과, 감정인 I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에 대한 이 사건 채권1)은 이미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통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은 민법상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을 양수받는 과정에서 적법한 양도통지나 승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이 사건 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채권에 관한 판결 내지 지급명령을 통해 그 시효가 연장되어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나아가 민법 제450조 제1항은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제3자는 양도채권에 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하지 않는 법률상의 지위를 가진 자 또는 양도채권에 대하여 법률상의 이익을 가진 자를 의미하므로, 단지 채권양도에 의하여 사실상 내지 간접적 영향을 받는 사해행위취소에 있어 수익자나

전득자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2).

나. 사해행위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망 D의 상속인으로는 피고, C을 비롯한 4인의 자녀가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은 1/4 상당이다.

나아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C에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C이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분 1/4 지분을 포기하고 그 부분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행위는 C의 일반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는데, 이에 C의 지분도 포함되어 있는 점이 감안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금전채무의 경우 상속이 개시됨과 동시에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상속되는 것이므로 피고가 이를 부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사해행위 성립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

1) C은 이 사건 분할협의로써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4 지분을 처분하였으므로 C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보이고, C의 형제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이가 제사 등 조상숭배의 미풍양속과 가족 전통의 전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C과 사이에 연락이 두절되어 사해행위에 대한 협의 등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를 선의 주장으로 선행하여 보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추정을 반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악의 추정을 반복할 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

1)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와 원상회복의 방법

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수익자로부터 전득자로 이전되어 그 등기까지 경료되었다면 후일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익자가 전득자로부터 목적물의 소유권을 회복하여 이를 다시 채권자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써 채권자에 대한 목적물의 원상회복의무는 법률상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참조), 한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며(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 또한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나) 앞서 본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분할협의 후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G조합을 지상권자로 한 지상권을 설정하였고, 다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일부를 변제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이 사건 3, 4부동산에 관한 G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후 그 소유권을 소외 H에게 이전하였는바, 이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태에 있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C의 일반채권자들을 위하여 공동담보로 제공되었던 가액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사해행위 취소와 가액배상의 구체적인 범위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2021. 4. 14. 현재 시가는 108,357,000원임은 앞서 본 바이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가 그 이후 변론종결 무렵까지 변동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시가감정평가액을 변론종결 무렵의 이 사건 부동산 시가로 볼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33,800,00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중 피고가 변제한 18,352,250원만을 공제한 금액 중 C의 상속지분 1/4에 해당하는 금액인 22,501,187원 $\{= 90,004,750\text{원}(=108,357,000\text{원} - 18,352,250\text{원}) \times 1/4\}$ 이 가액배상의 금원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이 사건 근저당권 중 말소된 부분은 이 사건 3, 4부동산에 관한 것으로 일부에 그치고, 나머지 부동산에 관한 부분은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점, ②이 법원의 G조합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확인되는 내역은 이 사건 분할협의 이후에 이루어진 피고의 대출과 변제내역에 관한 것이어서 이러한 내용만으로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③이 사건 분할협의 이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 피고의 명의의 2015. 3. 20.자 18,300,000원 및 2015. 4. 23.자 10,000,000원의 대출이 실행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후자의 대출금은 이 사건 분할협의 이후 추가 대출로서 공제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대출약정 시기가 근접하고, 모두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대출금이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별다른 변동이 없는 점(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자신으로

변경한 후 그 채권최고액을 20만 원 증액하였을 뿐이다)을 고려하면, 위 각 대출금채권의 성격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뚜렷하게 구별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망 D의 G조합에 대한 80,000,000원 상당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망 D의 사망 이후 피고가 70,000,000원 상당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여기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근저당권자인 G조합이 2015. 2. 5.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면서 그 청구금액을 이 사건 근저당권의 당시 채권최고액인 33,800,000원을 상회한 59,235,505원으로 산정한 점을 더하여 보면, 위 임의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이후 이루어진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그 채권최고액을 상회하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법원의 G조합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 사해행위인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원고의 주장과 같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이와 같이 근저당권의 정확한 피담보채무액을 알 수 없는 경우 담보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공제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시가감정평가액이 조작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라) 그렇다면, C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상속분 중 일반채권자를 위하여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부분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1/4에 해당하는 18,639,250원[= 74,557,000(= 108,357,000원 - 33,800,000원) × 1/4] 상당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위 18,639,25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18,639,25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환

별지1.

부동산의 표시

1. 경상남도 밀양시 J 답 440㎡
2. 경상남도 밀양시 K 답 6㎡
3. 경상남도 밀양시 L 답 473㎡
4. 경상남도 밀양시 M 답 10㎡. 끝.

별지2

지급명령 및 판결 내역

순번	전소사건	후소사건	원금잔액	증거
1	부산지방법원 2005가소538374호 판결 원고 주식회사 A 확정: 2006. 5. 9.	부산지방법원 2016차전7664호 지급명령 채권자 주식회사 A 접수: 2016. 4. 8. 확정: 2016. 6. 22.	4,886,883	갑1-1
2	부산지방법원 2007가소760533호 판결 원고 주식회사 A 확정: 2008. 7. 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차전2679호 지급명령 채권자 주식회사 A 접수: 2018. 4. 3. 확정: 2018. 5. 15.	3,000,000	갑1-2
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06가소57022호 판결 원고 N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접수: 2007. 3. 2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차17호 지급명령 채권자 주식회사 A 접수: 2017. 3. 2. 확정: 2017. 7. 8.	960,299	갑1-3
4	부산지방법원 2006가소642379호 판결 원고 O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확정: 2007. 4.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153131호 지급명령 채권자 주식회사 A 접수: 2017. 4. 4. 확정: 2017. 6. 10.	2,743,793	갑1-4
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06가소93356호 판결 원고 N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확정: 2007. 6.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58981호 지급명령 채권자 주식회사 A 접수: 2017. 2. 6. 확정: 2017. 7. 11.	4,644,195	갑1-5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224111호 지급명령 채권자 주식회사 A 접수: 2017. 5. 24. 확정: 2017. 8. 17.	4,274,492	갑1-6
합계			20,509,662	

1) 이 사건 채권 중 순번 6항의 경우 그 채권의 성립일자가 분명하지 아니하나, 지급명령(갑제1호증의6)에서 확인되는 이자율, 계산된 연체이자액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이 사건 분할협의 이전에 성립된 채권으로 봄이 상당하다.

2) 한편 이 사건 채권 중 순번 1항 및 2항의 경우 원고와 C 사이에 양수금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고, 순번 3항의 경우도 확정판결 이후 승계사실 증명을 전제로 한 승계집행문이 부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위 각 채권에 관하여는 적법한 채권양도통지의 존재를 추인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부분 채권의 합계액만으로도 아래에서 보는 C의 지분가액을 상회하므로, 설령 나머지 채권에 대한 채권양도가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보더라도, 이는 결론에 영향이 없다.